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073
----------	-------

발의연월일 : 2026. 2. 26.

발 의 자 : 박수현 · 서삼석 · 윤준병
이정문 · 이개호 · 양부남
이기현 · 김원이 · 이재관
양문석 · 김주영 · 최혁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를 예우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독립유공자 서훈 기준이 1895년 을미의병부터 시작되어, 1894년 9월 2차 동학농민혁명은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봉기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해당 혁명 참여자는 독립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1894년 9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가 독립유공자라는 점을 명시하여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혁명에 참여하여 희생한 사람을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호 및 제2호 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

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서 1894년 9월에 2차로 봉기한 혁명에 참여하여 순국한 자

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

한 사실이 있는 자

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서 1894년 9월에 2차로 봉기한 혁명 참여자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자료요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조제1호나목 또는 같은 조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를 결정하는 경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 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 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신 설>

<신 설>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서 1894년 9월에 2차로 봉기한 혁명에 참여하여 순국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

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서 1894년 9월에 2차로 봉기한 혁명 참여자

<신 설>

제6조의3(자료요구) ① 국가보훈
부장관은 제4조제1호나목 또는
같은 조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
는지를 결정하는 경우 「동학
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
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
예회복 심의위원회(이하 “심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보훈부장관에게 자료를 제출하
여야 한다.